

「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」 참여기관 상시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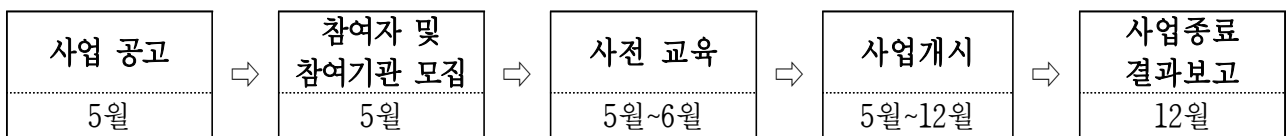
신중년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, 사회적기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「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」의 참여기관 상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6일
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5. 5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
 - 공공기관, 행정기관, 사회적기업, 예비적사회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 민간단체(법인), 노인일자리 전담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
 - 참여자 : 50세 ~ 69세 퇴직 전문인력 100명 ※ 활동기간 8개월 이내
- 지원내용
 - 참여자 참여수당(시간당 3천원, 일 8시간, 월 120시간, 연 480시간 이내 지원)
 - 참여자 활동실비(교통비 3천원,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 9천원 추가지원)
- 추진일정



2

신청방법

- 신청대상 : 공공기관, 행정기관, 사회적기업, 예비적사회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(법인), 노인일자리 전담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예산범위 내 소진시 까지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
- 접수처

운영기관	담당자	전자우편	연락처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고용창출팀 박순호 팀장	snowpark@ubpi.or.kr	052-283-7201

- 신청서류 : 참여기관 신청서, 활동 대상 기관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※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, 사회적기업 인증서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,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
 - ※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전담인력에 대한 사항(업무담당자) 명확히 기재

3

선정방법

- 선정방법 : 신청서 등 제출서류 토대로 적정성 여부 확인
- 심사기준 : 참여기관 충족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, 사업계획 타당성, 사업관리 적절성, 사업평가 방안 등 선정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
 -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,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
 - 전년도 운영기관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적 및 처분내용 반영
 -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심사
- 선정결과 : 참여기관 개별 통보

4

협약체결 및 활동실시

- 참여기관 선정 시 진흥원↔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
 - 협약내용 : 기관별 의무, 책임 등 그 밖에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등
- 참여자 연계 및 참여자↔참여기관 간 협약서 체결 후 활동실시
 - ※ 활동가능 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준으로 일 최대 8시간 활동 가능

5**참여자 활동비 지급**

○ 식비 및 교통비

-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1일 식비 9천 원, 교통비 3천원 지급

※ 1일 4시간 미만 참여시 교통비 3천원만 지급(식비제외)

○ 참여수당

- 1시간 당 3천원 참여수당 지급

※ 활동시간은 일 8시간, 월 120시간, 연 480시간 이내로 한정하나, 참여자 미달 시 월 80시간, 연 32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 가능

- 참여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, 잔여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

6**기타사항**

○ 협의에 따라 진흥원과 참여기관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병행 가능

○ 참여기관이 직접 선발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 직접 선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

○ 사전 직무교육 운영(당해 사업년도 내)

- 교육대상 :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

- 교육시간 : 참여자 8시간 이상, 참여기관 담당자 4시간 이상

-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교육을 이수

-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참여 이후에라도 교육 이수

○ 참여기관 지도점검 실시(매 반기별 1회) ※ 필요시 수시 점검

- 참여기관의 적정성, 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여부

-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적정성 · 활동협약서의 이행형태

- 지원금 수령의 적정성 등

※ 지도 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협약위반사항 등 발생 시 운영 지침상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불이익 조치

※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
붙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서식 1부. 끝.